

보도시점

2024. 6. 3.(월) 조간
2024. 6. 2.(일) 12:00

배포

2024. 5. 31.(금)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이 시작됩니다

- 6월 3일(월)부터 시·군·구(보건소) 방문하여 신청 -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우울·불안 등 마음건강 돌봄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이 6월 3일(월)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바우처)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사업으로, 올해 7월부터 신규 시행된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33m² 이상의 서비스 제공 공간을 확보하고, 자격 기준을 갖춘 제공기관의 장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등록을 원하는 기관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군·구(보건소)를 방문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 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된 기관은 시·군·구에서 제공자 등록증, 사업 홍보 포스터, 리플릿, 제공기관 부착용 사업 로고 스티커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전, 제공인력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침, 심리상담 표준 매뉴얼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서비스 질 관리 및 효과적인 심리상담을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이 6월 3일(월)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바우처)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사업으로, 올해 7월부터 신규 시행된다.

* [2024.5.21. 보도참고자료 참조] “7월부터 우울·불안 등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기관은 바우처 발급받은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후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서 필수 포함사항) 계약기간, 제공인력, 계약금액,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환불규정 등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33㎡ 이상의 서비스 제공 공간을 확보하고**, 제공기관의 장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과 단가가 1급 및 2급 유형으로 구분된다.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2024.5.21.) 참고

** 이용정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3.3㎡를 추가로 확보

< 2024년 서비스 유형 >

구분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서비스 단가 (1회당)
1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 (민간자격)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소지자가 다음 중 하나의 수련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석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2,000시간 이상 - 박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1,000시간 이상 ※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은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에 한함	8만 원
2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 (국가기술자격) 임상심리사 1급 ◦ (민간자격)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학사 또는 석사 학위소지자가 최소 1,000시간 이상 심리상담 수련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은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에 한함	7만 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서비스 제공인력 1급 유형의 기준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다만, 시·군·구가 제공기관의 지역적 분포, 적정공급 규모 등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인력 2급 유형 기준을 충족한 자도 제공기관의 장으로 인정될 수 있다.

등록을 원하는 기관은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군·구를 방문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붙임 5 참고). 질 관리 및 효과적인 심리상담을 위해 제공기관의 장은 서비스 제공인력에게 사업 지침, 전국민 마음투자 심리상담 표준 매뉴얼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교육 이수증을 등록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3개 학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상담학회, 한국심리학회)가 참여하였으며, 해당 교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연수원(<https://www.maumtija.or.kr>)을 통해 6월 3일(월)부터 제공

제출서류 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된 기관은 시·군·구에서 제공자 등록증, 사업 홍보 포스터, 리플릿, 제공기관 부착용 사업 로고 스티커를 제공받게 된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바우처 정부지원금 청구를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 정보*를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입력하고, 스마트폰 결제앱 또는 전용단말기를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붙임 6 참고).

* 인적정보, 자격증정보, 교육정보, 서비스정보, 급여정보 등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적시에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 라고 말하면서,

“시·군·구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신청을 받으면 신속한 심사 및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당부하였다.

- <붙임> 1.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2.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홍보 리플릿
 3.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부착용 스티커
 4.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개요
 5.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신청 구비서류
 6.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후 준비사항 안내

담당 부서	정신건강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연숙 (044-202-3870)
	정신건강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박동희 (044-202-3874)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이·맘·때!

이제, 마음건강을 돌봐야 할 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이 시작됩니다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최대 64만원 지원

서비스 대상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4.7.1.~12.31.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24.10월 예정)

문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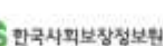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 www.129.go.kr

서비스 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바우처)
 - 1:1 대면으로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제공
-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주소지 관계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 선택 가능
 -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http://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 가격

- 서비스 단가(1회당) :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
- 정부지원금 소득수준별 차등화
 - 정부지원금 : 392,000원 ~ 640,000원(총 8회 기준)
 - 본인부담금 : 면제 ~ 192,000원(총 8회 기준)



서비스가격

서비스 단계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1) 기준 총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금 0%
 (2) 기준 총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 본인부담금 10%
 (3) 기준 총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본인부담금 20%
 (4) 기준 총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금 30%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후보가족은 본인부담금 0%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기준총위소득			
		70% 이하 (0급-1급형)	70% 초과 ~ 120% 이하 (2급-3급형)	120% 초과 ~ 180% 이하 (4급-5급형)	180% 초과 (6급-7급형)
1 회 당	정부 지원금	80,000원	72,000원	64,000원	56,000원
	본인 부담금	-	8,000원	16,000원	24,000원
	합계	80,000원	80,000원	80,000원	80,000원
총 0 회	정부 지원금	640,000원	576,000원	512,000원	448,000원
	본인 부담금	-	64,000원	128,000원	192,000원
	합계	640,000원	640,000원	640,000원	640,000원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기준총위소득			
		70% 이하 (0급-1급형)	70% 초과 ~ 120% 이하 (2급-3급형)	120% 초과 ~ 180% 이하 (4급-5급형)	180% 초과 (6급-7급형)
1 회 당	정부 지원금	70,000원	63,000원	56,000원	49,000원
	본인 부담금	-	7,000원	14,000원	21,000원
	합계	70,000원	70,000원	70,000원	70,000원
총 0 회	정부 지원금	560,000원	504,000원	448,000원	392,000원
	본인 부담금	-	56,000원	112,000원	168,000원
	합계	560,000원	560,000원	560,000원	560,000원

이용절차

-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 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을 신청
 (전화, 인터넷, 방문 신청)
 ※ 지역별 제공기관 현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www.socialservice.or.kr) 검색 가능
-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비용결제

-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당일에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로 결제
 ※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현금, 카드, 현금납부)

유의사항

- 서비스 신청은 2024년 하반기 중 1회만 가능합니다.
- 서비스를 신청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1급/2급 유형)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신중히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바우처 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불가합니다.
- 서비스 지원기간(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까지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한 만료 시 서비스는 자동 종료 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www.129.go.kr

보건복지부 Wee센터 SSIS 한국사회복지정보원



2024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사업목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봄

지원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신청기간

2024. 7. 1. ~ 12. 31.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대상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대상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대상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대상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대상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도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자원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 (22~ 부산 등)

서비스유형

대상자는 1급 유형 또는 2급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
 ※ 신청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 변경 불가

- | 1급 유형 | 2급 유형 |
|--|--|
| ● 국가전문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 ● 국가전문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
| ● 민간자격 : 임상심리전문(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 ● 국가기술자격 : 임상심리사 1급 |
| | ● 민간자격 :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

신청방법

- | 대상자별 증빙서류 | 대상 1 | 대상 2 | 대상 3 | 대상 4 | 대상 5 |
|--|---|---|----------------------------|---|--|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능력개발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정신과전문의와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 사실재원통보서/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 사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 | | | | |
- 신청 자격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
 신청 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복지포) 신청 : 2024년 11월 예정으로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자살 예방·정신질환 조기 발견
- (사업 기간) '24.7월

□ 주요 내용

- (지원대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8만 명)

< 대상자 기준 >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서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지원내용)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총 8회기 제공(회당 최소 50분 이상)

- 심리검사* 실시 및 대상자 상황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1:1 대면으로 제공

* (예) ^우울의 평가 : PHQ-9(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불안의 평가 : GAD-7(Generalized Anxiety Disorder-7), ^자살 위험성의 평가 : P4 suicidality screen scale 등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등

- 바우처는 서비스 신청 10일 이내로 생성되며, 사용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지원기간 연장은 불가하며, 추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없음

○ (서비스 유형)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1급 및 2급 유형으로 구분

구분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1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 (민간자격)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소지자가 다음 중 하나의 수련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석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2,000시간 이상 - 박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1,000시간 이상 ※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은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에 한함
	◦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 (국가기술자격) 임상심리사 1급 ◦ (민간자격)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학사 또는 석사 학위소지자가 최소 1,000시간 이상 심리상담 수련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은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에 한함

○ (서비스 제공기관) 배치기준(제공기관의 장*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을 충족한 기관(정신의료기관, 민간 상담센터 등)

* (제공기관의 장 자격기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1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2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도 제공기관 개설 가능)

○ (서비스 가격) 1회당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별 차등화*

- * ①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자부담 0%
- ②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자부담 10%
- ③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자부담 20%
- ④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자부담 30%

- 단,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0%

<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1회당) >

구분		1급 유형			2급 유형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80,000원	-	80,000원	70,000원	-	70,000원
	70% 초과~120% 이하	72,000원	8,000원	80,000원	63,000원	7,000원	70,000원
	120% 초과~180% 이하	64,000원	16,000원	80,000원	56,000원	14,000원	70,000원
	180% 초과	56,000원	24,000원	80,000원	49,000원	21,000원	70,000원

<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총 8회) >

구분		1급 유형			2급 유형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640,000원	-	640,000원	560,000원	-	560,000원
	70% 초과~120% 이하	576,000원	64,000원	640,000원	504,000원	56,000원	560,000원
	120% 초과~180% 이하	512,000원	128,000원	640,000원	448,000원	112,000원	560,000원
	180% 초과	448,000원	192,000원	640,000원	392,000원	168,000원	560,000원

□ 서비스 제공 절차

① 대상자는 서비스 유형(1급/2급)을 선택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온라인) 신청은 2024년 10월부터 제공될 예정으로 추후 별도 안내

※ 2024년도 하반기 신규 사업이므로, 신청은 1회만 가능함

②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대상자 신청을 접수하여 관할 시·군·구(보건소)로 전송

③ 관할 시·군·구(보건소)는 최종 확인(증빙서류, 소득조사 등) 후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지

※ 서비스 내용, 이용자 준수사항, 바우처 가격,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서비스 이용절차 등 안내

④ 서비스 결정 통지를 받은 후, 대상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제공기관을 선택

⑤ 제공기관은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 제공(총 8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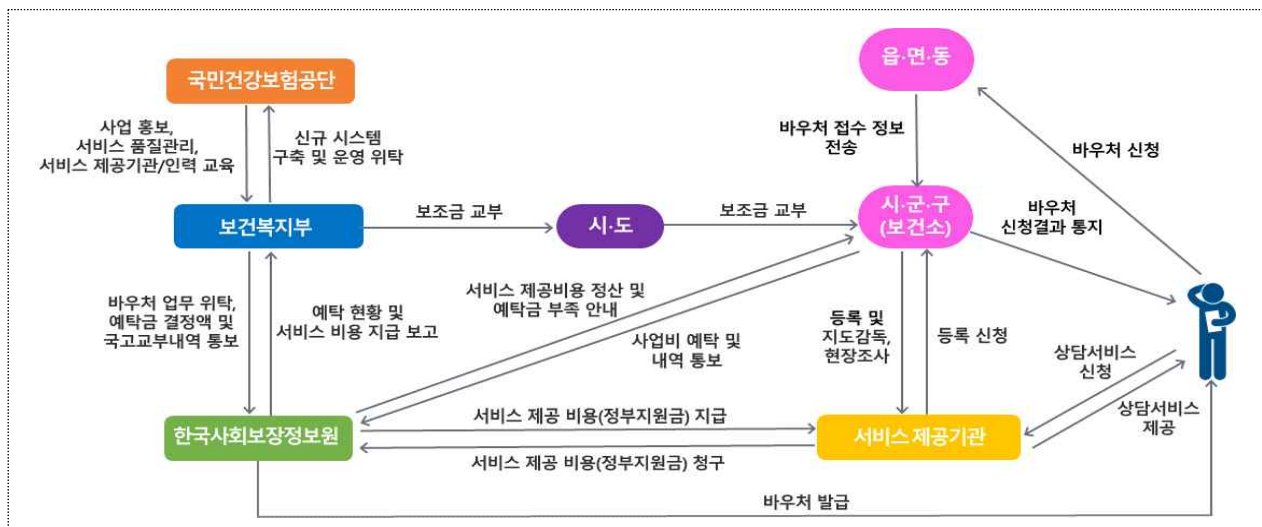
* (계약서 필수포함사항) 계약기간, 제공인력, 계약금액,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환불규정 등

⑥ 대상자는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납부, 제공기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

※ 시·군·구(보건소)는 교부받은 국비·지방비를 합한 사업비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

⑦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제공기관에 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

< 서비스 흐름도 >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신청 구비서류

항목	제출서류	비고
① 서비스 종류	•제공기관 현황	-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121p [서식 제13호 참고]
② 사회서비스 제공자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③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 확인
④ 법인	•법인정관 (필요 시)	- 임원 전체 작성
⑤ 기관장	•의사 면허증 또는 제공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⑥ 지급계좌	•통장 사본	
⑦ 시설기준	•건축물 현황도 상 평면도 * 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 -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 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 시설의 경우 해당기관의 장이 장소 사용을 허가한 문서(직인 확인)	- 평면도 상 서비스 제공공간 확인
⑧ 통신설비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 단말기 구비 계획 등 적정성 확인 ※ 제공기관은 바우처 전용 단말기 또는 스마트폰 결제앱을 통한 바우처 결제 필요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29~30p 참고)
⑨ 제공인력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 단, 근무 형태가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 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 학력증명서는 필수 서류가 아님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제출시기 :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교육 이수증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연수원에서 발급받은 교육 이수증

1 서비스 제공인력 등록

○ 서비스 제공인력 정보등록

- (정보등록) 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제공인력 정보를 전자바우처에 시스템 등록
- (ID 확인) 생성된 서비스 제공인력 ID로 서비스 결제

2 스마트폰 결제앱 사용 ... 안드로이드OS에서만 사용 가능, 통신사는 무관

○ (업데이트) 현재도 결제앱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결제 기능은 7월 1일 업데이트 예정

※ 스마트폰 결제 앱 접속 시 자동 업데이트되며, 전자바우처시스템 통해 별도 팝업 공지 예정

○ (사전확인) 바우처 카드 인식을 위한 NFC칩 탑재 확인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결제앱’ 내 ‘카드인식 테스트’를 통한 자가진단 가능

-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된 스마트폰만 사용 가능하므로,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려는 제공인력은 사전에 스마트폰 정보 등록 필요

※ 전자바우처시스템 : 제공기관관리 » 단말기관리 » 단말기통합관리(스마트폰 등록)

- 전용 단말기를 이미 사용 중인 제공인력은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사용 중인 전용 단말기 등록 해지 후에 스마트폰 등록

○ (사용절차) 아래 경로에 따라 설치 후 사용

※ 스마트폰 결제앱 사용 매뉴얼은 전자바우처시스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결제앱 사용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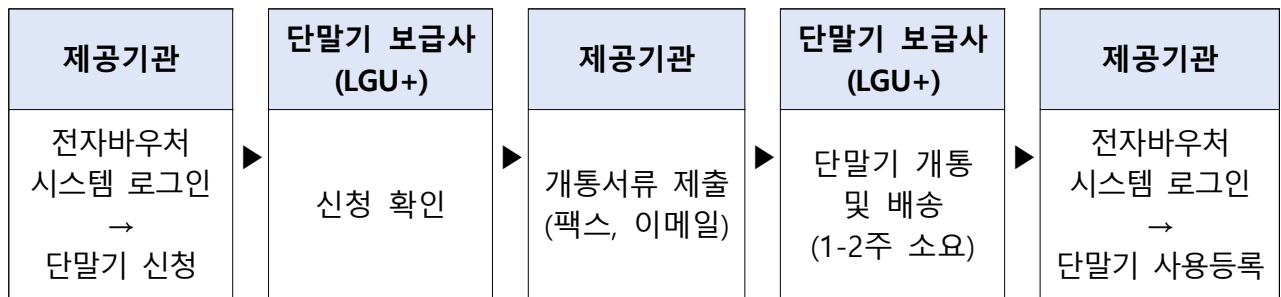


3 전용단말기 신청 ... 무상공급, 월별 통신료(약 2,000~5,000원) 제공기관 부담

- (대상기관) 지자체 등록 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정보 등록완료된 서비스 제공기관
- (신청절차)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서비스 제공인력 등록 후 아래 경로에 따라 단말기 신청
 - (업데이트) 현재도 전용단말기 신청은 가능하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결제 기능은 7월 1일 업데이트 예정

※ 단말기 화면 팝업으로 안내 예정

[단말기 신청 및 보급 절차]



※ (단말기 신청 및 개통관련 문의) 1899-0656, 단말기 보급사 콜센터

○ (참고) 전용단말기 사용 및 관리

- (등록기준) 단일 제공기관 내 제공인력은 단말기 1대에 등록 가능
- (비용청구) 개통서류 제출 시 신청한 자동이체 계좌를 통하여 비용 청구
- (유지보수) 단말기 A/S센터(1577-8911) 접수 후 택배 발송

※ 개통 후 24개월 이내 고장은 무상수리 원칙이나, 사용자 과실·천재지변의 경우, 유상처리

※ 전용단말기 사용자 매뉴얼은 전자바우처시스템 내 단말기 신청 시, 개통서류와 함께 확인 가능